

예산총칙

2018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18,852,564 | 12,565,577 |
| 일반회계 | 408,676,467 | 12,260,294 |
| 특별회계 | 10,176,097 | 305,283 |
| 기타특별회계 | 10,176,097 | 305,283 |
| 상수도특별회계 | 2,144,595 | 64,338 |
|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| 1,758,990 | 52,770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996,911 | 29,907 |
|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| 1,105,276 | 33,158 |
|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| 3,656,267 | 109,688 |
| 주차장특별회계 | 514,058 | 15,422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768,944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기금운영계획서는 별첨 "기금운영계획"과 같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